예 산 총 칙

2019년도 추경 1 회

제 1 조 2019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341,197,000	10,235,910
일반회계	337,200,000	10,116,000
특별회계	3,997,000	119,910
기타특별회계	3,997,000	119,910
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	670,000	20,100
주차장사업특별회계	3,154,000	94,620
지하수 관리 특별회계	173,000	5,190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"과 같다

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,733,218천원으로 한다.
(일반예비비 3,038,218천원, 재해재난목적예비비 620,000천원, 내부유보금 75,000천원)

제 4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2,2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